



음성출력용바

# 서울 행정 법 원

## 제 1 3 부

### 판 결

사 건 2016구합564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민정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dacted]

[Redacted]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2. 22.

### 주 문





1. 피고가 2015.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82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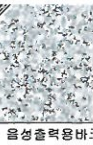
###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북 칠곡군에서 [redacted] 대학교(이하 'A대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임용되어 2011년 9월경부터 [redacted]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8. 18. 원고에게 '2015. 8. 19.부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 사유를 칭할 때에는 그 항목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한다).

#### 1) 성적 조작 지시

원고는 2014. 8. 23. 김선경 교수에게 이예술의 점수를 79점, 김영돈의 점수를 89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지원의 점수를 88점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음성출력용바:

같이 원고는 매 학기 성적 처리를 할 때 일부 교수들에게 성적 수정을 요구하여 성적 조작을 지시하였고,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인 성적 평가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

#### 2) 수업 거부 지시

원고는 2015. 5. 14. 14:30경 메이크업 아트실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지시하였다.

#### 3)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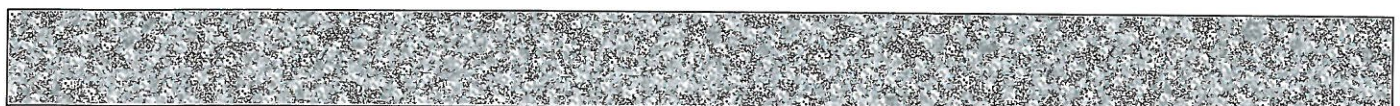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맡은 강의의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학생들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네일 아트 등 미용 시술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우연희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맡은 메이크업 스케치 강의의 수업 시간(매주 화요일 15:30부터 18:30 까지)에 수업을 두 번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전공주임교수로서 우연희 교수의 위와 같은 직무 태만에 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 4) 인건비 횡령

원고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고 지원 사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김선경 교수와 지양숙 교수의 명의로 그 인건비 명목으로 870만 원을 받았다.

#### 5) 허위 출장

원고는 2014. 3. 7.부터 2015. 3. 13.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김선경 교수나 지양숙 교수와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혼자서 출장을 갔다 왔을 뿐이고 김선경





교수나 지양숙 교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

#### 6) 속눈썹 재료 구입 등 관련 리베이트 수수

원고는 2014. 6. 15. '메디썸'으로부터 구입한 속눈썹 세트에 관하여 그 사장으로부터 대구예대 학생인 박희영 명의 계좌로 39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고, 2015. 4. 29. 및 2015. 5. 4.에 걸쳐 속눈썹 세트 거래 업체인 '뷰라'로부터 위 박희영 명의 계좌 및 대구예대 학생인 최미예 명의 계좌로 총 54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2015. 5. 11. 이후 헤나액 세트에 관하여 위 박희영 명의 계좌로 77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 7) 강사료 갈취

원고는 2015. 4. 20. 산학협력단에 출강하는 외래 강사인 김도윤 교수로부터 그 강의료의 10%인 18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하였다.

#### 8) 에이유(AU)뷰티건강산업연구소 규정 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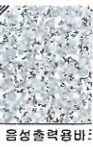
원고는 [REDACTED]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에이유(AU)뷰티건강산업연구소 규정'을 임의로 변조하여 회비 징수가 가능한 조항을 만들었다.

#### 9) 에이유(AU)뷰티건강산업연구소 교비회계 미처리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REDACTED]에 출강하는 외래 교수인 김도윤 교수로부터 23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 외래 교수들에게도 에이유(AU)뷰티건강산업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였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교비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 10) 불법 특강 실시 및 권유

원고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 외부 강사를 불러 특강(마취 연고를 사용한 불법 시술 행위)을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수강하도록 권유



음성출력용바:

하였다.

### 11) 허위 사실 날조 및 유포

원고는 2015. 6. 9. 밴드(Band, 모바일 커뮤니티)에 '참가인의 법인국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한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주기로 딜(deal)을 하였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원고는 '학교 인사위원회에 제보한 사람이 김선경'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밴드에 '법인국장의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하여 2015. 9. 17.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각 사유 중 이 사건 2, 11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의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며, 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사유 중에서 이 사건 4, 6, 10 사유의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4, 6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받은 인건비나 리베이트를 학과 운영비나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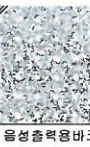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와 유사한 비위를 저지른 백양희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원고는 [REDACTED] 뷰티예술학과 조교수이자 학과장으로서 여러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는 등 학과에 많은 기여 및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4, 6, 10 사유만으로 원고를 가장 불이익한 징계인 파면에 처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다.

##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사유 중에서 이 사건 2, 11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의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4, 6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1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 즉 성적 조작 지시와 이 사건 7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 즉 강의료 갈취는 전공주임교수 및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며, 이 사건 5, 8, 9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 즉 허위로 출장을 보고하거나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을 변조하고 그 회비를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은 행위는 학교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교내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3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 즉 동아리 활동을 빙자하여 학생들을 영업 활동에 참여시키고 수업을 방기한 것은 교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적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역시 적법하다.



## 나.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1) 판단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2, 11 사유를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주장하지 않고 있고, 한편 이 사건 4, 6, 10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2, 11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 사건 4, 6, 10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4, 6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10 사유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이 사건 각 사유, 즉 이 사건 1, 3, 5, 7, 8, 9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2) 이 사건 1 사유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2014. 8. 23. '카카오톡' 모바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김선경 교수에게 이예슬의 점수를 79점, 김영돈의 점수를 89점으로 수정하라고 하고 최지원의 점수를 88점으로 하라고 함으로써,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담당 교수의 고유 권한인 성적 평가에 부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위에서 주장한 사실을 포함하여 '원고가 2014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김선경 교수에게 학생들의 성적을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김선경 교수의 성적 산정 업무 및 대구예대의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6. 1. 25. '원고가 김선경 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성적 책정은 담당 교수의 전권 사항으로 담당 교수가 원고와 성적 산정에 관하여 일정 부분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점, ② 기본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미 담당 교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성적을 그 담당 교수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교수에게 정당한 성적이 아닌 다른 성적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를 관철하려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와 참가인 측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인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을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원고에게 자신이 산정한 성적을 보여 주면서 그것이 적당한지를 먼저 물어보았고 원고는 그러한 담당 교수의 요청에 따라 특정 학생의 점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원고가 먼저 담당 교수에게 그의 의사에 반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성적의 부여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고와 참가인은 김선경 교수를 비롯한 겸임·외래 교수들이 전공주임교수인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어서 원고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김선경 교수 또는 다른 교수들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성적





평가에 부당한 관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1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 3) 이 사건 3 사유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REDACTED]에서 2015년 1학기에 매주 화요일 15:30부터 18:30까지 진행되는 '뷰티세미나1' 강의와 매주 목요일 14:30부터 17:30까지 진행되는 '미용연구2' 강의를 맡았는데, 위 각 강의 시간에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학생들이 [REDACTED]의 다른 학생들이나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네일 아트 등 미용 기술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하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 또한 [REDACTED]에서는 2015년 1학기에 매주 화요일 15:30부터 18:30까지 우연희 교수가 '메이크업 스케치'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강의 시간에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말고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 한편 이처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여 얻은 수익은 학생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학과(뷰티예술학과)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REDACTED]의 교수로서 자신이 맡은 강의를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고 그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미용 기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그 강의 시간에 돈을 받고 미용 기술을 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3 사유는 위 인정 범위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 4) 이 사건 5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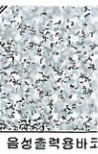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7.부터 2015. 3. 13.까지 32차례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김선경 교수나 지양숙 교수와 함께 출장을 다녀온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았던 사실, 그런데 위 32차례의 출장 내역 중에는 원고가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은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선경 교수나 지양숙 교수는 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출장을 다녀온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출장 사실을 상부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5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 5) 이 사건 7 사유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전공주임교수와 이 사건 연구소 소장이라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외래 강사인 김도윤 교수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강의료의 10%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도윤이 대구 예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강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을



원고가 '갈취'하였다는 점, 즉 원고가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김도윤의 의사에 반하여 김도윤으로부터 위 강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7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 6) 이 사건 8 사유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은 대구예대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을 개정하여 회비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 규정에 회비 부분을 추가하는 등 이를 임의로 변조하였고, 변조한 위 규정을 이 사건 연구소의 회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6. 1. 25.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은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변조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설령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대구예대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러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구소 규정에 회비 징수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추가한 수정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본에 대하여 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하여 원래의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은 아무 변동이 없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단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무슨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 규정관 관련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8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7) 이 사건 9 사유

피고와 참가인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서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명의로 징수한 회비는 위 '기부금'에 해당하며, 한편 대구예대 재무 회계규정 제9조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에 의하면 학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징수한 회비에 대해서는 교비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는 그 회비에 대하여 교비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명의로 징수하였다는 회비가 교비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는 수입(세입)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 을 제8호증의 2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 명의로 징수하였다는 회비는 결국 이 사건 연구소에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비 명목으로 거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명목의 회비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명의로 징수하였다는 회비는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연구소 규정을 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편취·갈취한 돈이라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위 회비는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서 더더욱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교비 회계'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8호증의 2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구소의 명의로 징수하였다는 회비가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하는 수입(세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9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 8)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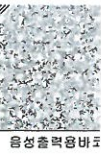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① 이 사건 3 사유 중 앞서 3)항에서 인정한 부분, 즉 원고가 자신이 맡은 강의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고 그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미용 시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그 강의 시간에 돈을 받고 미용 시술을 하게 함으로써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② 이 사건 4 사유, 즉 원고가 국고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의 명의로 인건비 명목으로 870만 원을 받음으로써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③ 이 사건 5 사유, 즉 원고가 출장 사실을 상부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④ 이 사건 6 사유, 즉 원고가 합계 1,007만 원(390만 원 + 540만 원 + 77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음으로써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⑤ 이 사건 10 사유, 즉 원고가 학교 당국의 허가 없이 외부 강사를 불러서 불법 시술 행위와 관련된 특강을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수강하도록 권유함으로써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의 다섯 가지만이 인정된다.

#### 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보건대, ①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은 열한 가지의 이 사건 각 사유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 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위에서 본 다섯 가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징계 양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기에는 그 징계 양정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설령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4, 6 사유를 통하여 받은 인건비 870만 원이나 리베이트 1,007만 원을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청렴 의무 위반의 중대한 비위라고 보아 원고를 대구예대의 교원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배제를 위한 징계에는 파면뿐 아니라 해임도 있으므로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상 가장 불이익한 징계인 파면을 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인정되는 다섯 가지 징계 사유 중 이 사건 4, 6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상대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인 점, ④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원고에게 다른 징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되는 다섯 가지 징계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립학교법상 최고한도의 징계인 '파면'의 징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파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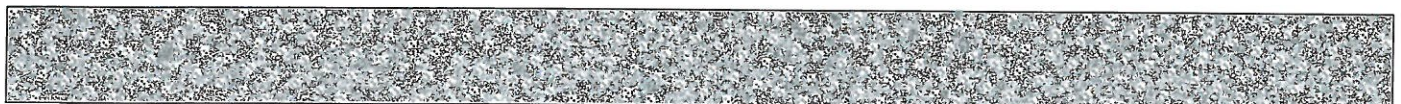
### 3. 결론



음성출력용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u>유진현</u>	
	판사	서범욱	<u>서범욱</u>	
	판사	이호동	<u>이호동</u>	







# 정본입니다.

2016. 12. 23.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조동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